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와 제2조제3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16(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0조의11제1항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3. 저장시설의 소유 또는 임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0조의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17(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신고) 법 제10조의12에 따라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수출입업의 개시(휴업·폐업)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18(선박용천연가스 수출입 신고 등)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및 수송계약을 체결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법 제10조의13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면 계약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6서식의 천연가스 계약(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서·수출계약서 또는 수송계약서 사본 2부(외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어번역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구입할 천연가스의 사용예정기간 중의 천연가스 판매계획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0조의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19(천연가스 수출입계획의 통보 사항) 법 제10조의13제2항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하는 수입계약 또는 수출계약 체결예정일부터 30일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천연가스 수출입계획서
2. 천연가스의 사용계획서
3. 계약상대자와 천연가스 품질

제10조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0(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0조의15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의6과 같다.

제17조제3호에 따른 별표 6의2제5호를 삭제하고 제17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6의 6
- 제62조의7 본문 중 “자가소비용직수입자”를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및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스도매사업자의 선박에 대한 공급 특례) 가스도매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게 선박용 천연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②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②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사용되는 용도로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중 정당한 사유로 도시가스충전사업자로부터 액화천연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액화천연가스 사용자	4. <삭 제>
③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③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액화도시가스 선박 충전사업: 저장 탱크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통하여 공급받은 액화도시가스를 제2항제4호에 따른 선박에 충전하는 사업	5. <삭 제>
<신 설>	제10조의16(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10조의11제1항에 따

<신 설>

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3. 저장시설의 소유 또는 임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0조의17(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 신고) 법 제10조의12에 따라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수출입업의 개시(휴업·폐업)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18(선박용천연가스 수출입 신고 등)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및 수송계약을 체결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법 제10조의13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면 계약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6서식의 천연가스 계약(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신 설>

다.

1.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서·수출계약서 또는 수송계약서 사본 2부(외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어번역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구입할 천연가스의 사용예정기간 중의 천연가스 판매계획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0조의19(천연가스 수출입계획의 통보 사항) 법 제10조의13제2항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수입계약 또는 수출계약 체결예정일부터 30일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천연가스 수출입계획서
2. 천연가스의 사용계획서
3. 계약상대자와 천연가스 품질

<신 설>

제10조의20(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0조의15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의6과 같다.

제17조(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7조(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설>	7. <u>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6의 6</u>
8. (생략)	8. (현행과 같음)
제62조의7(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 계획) 법 제39조의6제3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이용하려는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 제조사업자, <u>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u> 법 제39조의2에 따른 공사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2조의7(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 계획) ----- ----- ----- <u>자가소비용직수입자 및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u>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 [별표1의6] 등록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가목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의 기준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을 면제하거나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위 반 사 항	해당 법조문	행 정 처 분 기 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법 제10조의11 제2항에 따른 천연가스사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조의15 제2항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별표6의2] 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의 기준

현행	개정안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액화도시가스 선박 충전	5. < 삭제 >
6. (생략)	6. (현행과 같음)

□ [별표6의6]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술·검사의 기준

1.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한 천연가스 선박 충전

이 기준은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천연가스를 선박 연료탱크 또는 선박 연료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가. 시설기준

- 1) 충전장소의 중심(지면에 표시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선박의 외면까지의 거리는 3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방호책 등을 설치하여 선박과의 충돌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연가스를 선박에 충전하기 위한 차량의 설치 대수는 2대 이하로 하고, 2대의 차량이 진입, 진출 및 동시에 주정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3) 충전장소의 지면에는 차량의 주정차위치와 진입 및 진출 방향을 표시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천연가스 선박 충전장소"라는 표시를 할 것.

4) 충전장소의 주위에는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충전 중 엔진정지"라는 표시를 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5) 정전기 제거용 접지코드 등 정전기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6) 긴급사태가 발생 시 이를 신속히 통보하고, 충전작업 전·중·후의 작업상황을 선박내의 작업자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신설비를 구축할 것

7) 충전장소와 화기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는 8m 이상으로 하고, 충전장소에는 인화성물질이나 발화성물질이 없을 것

나. 기술 기준

- 1) 충전작업은 풍랑 등이 심하지 않은 온화한 날씨에 실시하며, 반드시 지정된 충전장소에서 실시할 것
- 2) 충전작업 전에 차량이 앞뒤로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자동차 바퀴의 전후를 차바퀴 고정목 등으로 확실하게 고정하고, 자동차의 수동 브레이크를 채울 것
- 3) 충전작업 전에 정전기 제거용 접지코드 등을 이용하여 정전기 제거조치를 할 것
- 4) 충전작업 중 선박이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작업 전에 정박 밧줄의 고정상태 등 선박의 정박 상태를 확인할 것
- 5) 충전중에는 선박 보수작업 또는 다른 선박의 접근을 금지할 것
- 6) 충전중에는 충전장소 및 선박주위에 충전작업 관련자 이외의 자의 출입을 금할 것
- 7) 그 밖의 안전유지기준, 충전 기준 및 점검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6의2 제4호 나목의 기술기준을 준용할 것. 이 경우 "자동차 용기"는 "선박 용기 또는 탱크"로 보고, "액화도시가스자동차"는 "천연가스 선박"으로 본다.

다. 검사 기준

- 1)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검사항목은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한 선박 충전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검사 종류	검사항목
가) 완성검사	가목 및 다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나) 정기검사	① 가목 및 다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사항 ② 나목 및 다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사항

- 2)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한 선박 충전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라. 그 밖의 기준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한 선박 충전과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적용한다.

□ [별지 제11호의4 서식]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선박용천연가스사업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	------	------	-----

신 청 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신청내용

신청내용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1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1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등록 신청 ·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변경등록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 · 결재

→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말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11호의5 서식] 사업 개시·휴업·폐업 신고서

[] 선박용천연가스사업

[] 개시

[] 천연가스수출입업

[] 휴업

신고서

[] 폐업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	----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사업의 개시	년 월 일 사업개시
사업의 휴(폐)업	기간 사유
사업의 재개시	년 월 일 사업 재개시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16에 따라 위와 같이 []선박용천연가스사업 · []천연가스수출입업의 []개시 · []휴업 ·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11호의6 서식] 수입·수출·수송계약 신고서

[]수입계약

천연가스

[]수출계약

[]신고서

[]수송계약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명칭)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수량
선박명 및 적재량
계약기간

변경	변경 내용
신고	변경 전
	변경 후
내용	변경사유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19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가스 []수입계약신고 []수출계약신고 []수송계약신고 []수입계약변경신고 []수출계약변경신고 []수송계약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서·수출계약서 또는 수송계약서 사본 2부(외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어번역문 1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수수료
	2. 구입할 천연가스의 사용예정기간 중의 천연가스 판매계획서 1부	없음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